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포럼

---

# 지역소멸 위기! 대안적 지역교육의 해법

---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 충북진로교육원 세미나실(1층)

주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등록	13:30~ 14:00	30'	사전 접수
소개	14:00 ~ 14:05	5'	◦좌장 이은주 (충북참여연대 교육모임 고문, 청주교대 교수)
발제	14:05~ 14:30	25'	◦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원장)
토론	14:30~ 15:30	각 9	◦ 토 론(6명) 이현철 (前 옥천군 청성면 면장) 엄희진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한석주 (제천 청년마을(주) 대표) 윤희철 (충북도교육청 행정과 주무관) 노한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과정) 홍성학 (충북보건대 명예교수, 충북참여연대 상임위원)
	15:30~ 15:40	10'	◦ 질의응답 및 폐회

## 목차

### 발제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주민들이 만드는 지역교육생태계 / 양병찬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원장)	4
---	---

### 토론

/ 이현철 (前 옥천군 청성면 면장)	38
/ 엄희진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42
/ 한석주 (제천 청년마을(주) 대표)	44
/ 윤희철 (충북도교육청 행정과 주무관)	45
/ 노한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과정)	50
/ 홍성학 (충북보건대 교수, 충북참여연대 상임위원)	58

#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주민들이 만드는 지역교육생태계

양병찬 /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원장

## I. 지역공동체의 붕괴와 교육 문제

### 1.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

한국은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도시화 현상은 과거 촌락을 형성해 유지적으로 유지하던 장소 중심의 전통적 공동체 생활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농향도 현상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부담을 주었다. 도시로 막대한 인구 유입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관계의 확대와 복잡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인간관계의 개인화와 형식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은 지역 주민의 이탈 현상 심화로 공동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속도는 세계적 수준으로 이로 인한 공동체 해체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평가에서 ‘공동체 생활’ 지표부문에서 2012년 34위, 2016년엔 최하위인 36위를 기록하였다(OECD, 2013; OECD, 2017).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지인이 있다’라는 지지네트워크의 질 항목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76%를 기록, OECD 평균 89%를 크게 밑돌았을 정도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 현상이 뚜렷하다(OECD, 2017). 이러한 공동체의 약화는 현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사적 사회자본의 취약성에 있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의 3요소 중 하나인 사적 신뢰(28위)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이는 전통 대가족의 해체와 이혼율 상승, 가까운 주변인에 대한 의존 정도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본 단위인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와의 신뢰의 붕괴에서 기인한다(한상환 외, 2014). 이러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는 궁극적으로 고립감을 유발하며 낮은 삶의 만족도(2017년 30위)와 높은 자살률(2015년 2위)의 원인이 된다(OECD, 2017). 이처럼 ‘격차’와 ‘관계의 단절,’ ‘불안’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된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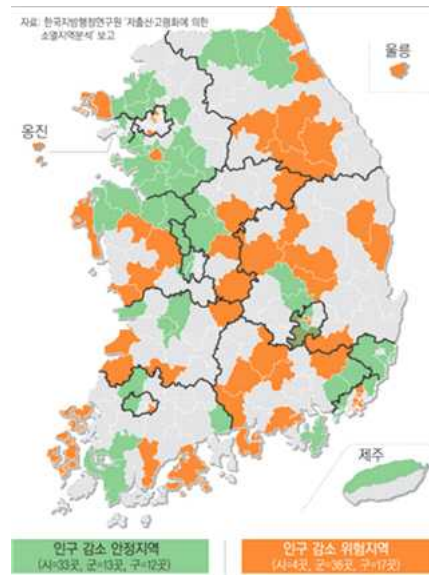
###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과 농촌 학교의 통폐합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지역소멸론’으로 해석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일본

지방창성회의(地方創成會議) 의장 마스다 히로야의 「지역소멸」(2014)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를 예측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한국 고용정보원(이상호, 2017)도 마스다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지표들을 차용하여 7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sup>1)</sup> 특히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지역-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 지역을 예측한 한국고용정보원(박승규·김선기, 2016)의 연구도 나와 ‘출산지도’나 ‘여성이 아이 낳는 도구냐’ 등의 논란이 확산되었다. 또한 ‘(가칭)지역소멸대응지역활력특별법’ 연구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도 이어졌다.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은 차지하고 우선 이보다 먼저 지역 학교 소멸(통폐합)이 지역 소멸에 선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미 산업화 초기였던 1980년대부터 시작된 농촌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의 교육적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이에 지역 재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림-1] 소멸예상 지역 구분도



출처: 박승규·김선기(2016.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지역소멸 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xiii.

## II. 교육 문제에 대한 공동의 자각

### 1. 학교와 지역의 관계

#### ○ 지역으로부터 고립된 섬, 학교(울센, 1973)

- 지역과 가정이 학교교육에 협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도 사회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임
- 학교가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1) 1. 201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이 역전됨 2.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들은 이미 79개에 달함. 3.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의 지역 간 격차는 증가. 4.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들은 어디일까? 5.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지역들은 어떤 곳일까? 6. 젊은 여성이 집중된 서울권의 출산율이 가장 낮음. 7. 젊은 여성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호, 2017).

로부터 고립된 공간(Stand alone)에서 지역사회의 중심 학교로 전환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 구축의 양대 축은 학교와 지역사회

-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교류 협력과 개방, 자원 활용, 교육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분담과 공조 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됨
- 최근 교육청에 확산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의미 파악할 필요

○ 주민 주체 형성을 통한 지역 발전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 공유>

- 개인, 집단, 조직, 제도, 문화가 얽혀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역시, 다양하고 융복합적 성격을 가진 주체들의 결합이어야 함
-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이 하나의 교육 거버넌스 체계 안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그 문제에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함. 즉,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교육 문제가 '자기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함. 이는 곧 지역 문제에 대한 주체들의 책임 공유로 연결될 수 있음
- 각 주체들의 주요 사업 대상 및 내용, 사업의 목표를 정리하고, 그것들이 '지역사회'차원에서 해석할 때 다른 어떤 주체들과 만나게 되는지를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결국 주체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맞닿아 있음을 각자가 확인하게 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주체 간 공동의 책임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주체 간 역할 분담>

-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각 주체들이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에 따라 충실하게 기능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의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 역할이 분담되어야 함
- 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 거버넌스를 통한 정보 공유를 넘어, 지역을 위한 공동사업이 함께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함.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여러 주체들에게 각자의 성격에 맞는, 각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고, 그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구상하여야 함
- 상호 격려, 지지, 신뢰 기반 확보 : 거버넌스는 주체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수평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주요 특징이 있음. 이상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각 주체들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 학교와 지역의 관계

### ○ 지역사회학교 운동의 출발 : 진보주의 학교에 대한 비판

- 1930년대를 기준으로 미국 등 구미 선진국에서 학교의 역할 확대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교육철학으로 발전되기 시작함
- 올센(Olsen, 1973: 26)은 학교를 전통적 학교(Traditional School), 진보적 학교(Progressive School),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나누었음. 다음 <표-1>은 전통적 학교, 진보적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학교의 특징을 제시하였음

<표- 1> 미국의 세 가지 학교 특징

구 분	전통적 학교	진보주의 학교	지역사회학교
기본적인 방향	교과서중심	아동중심	지역사회중심
아동관	모든 아동은 똑같다.	개인차를 강조	개인차는 사회적 참여와 직접 관계가 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악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도 선도 아니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점적 동기	훈육	개인적 성공	집단적 성공
교육방법	암기, 교과서 사용, 사실과 기술 습득	자발적이고 개별적 연구문제 해결	집단책임, 집단설계,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엄격한 교육과정 훈육적인 과목	아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지역사회의 문제와 과정을 중심으로 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권위로 접근	장래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생활경험	지역사회활동에 직접 참여시키고 훈련시킨다.
사회질서	현존하는 사회질서 속에 아동을 부합시킨다. 현존상태를 유지	보다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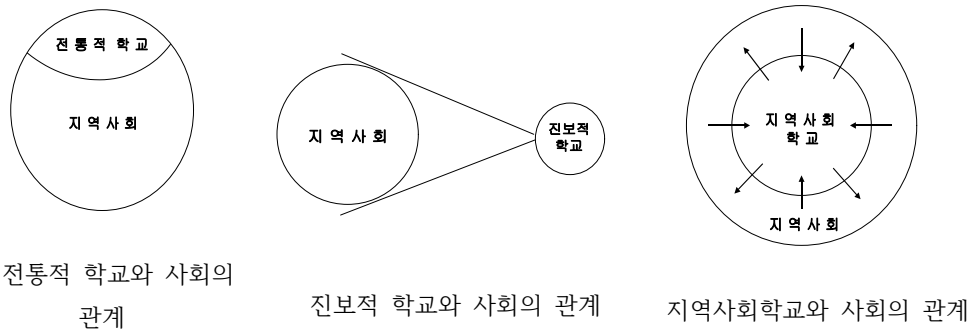
자료: W. Brookover(1975). The Sociology of Education. (Dorsey Press). p. 364.

- 진보주의교육 자체의 결함이 지적되면서 출발하였는데,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흥미와 자유, 개인적 성공과 경쟁에 치우치게 됨으로서 교육에 필요한 사회적 관심, 사회 질서, 협동과 봉사 등이 소홀히 되었음.

- 그 비판자들 중에는 진보주의교육 운동의 지도자인 킬패트릭(Kilpatrick)과 카운츠(Counts) 그리고 지역사회학교 건설의 선구자인 쿡(Cook)과 올센(Olsen) 등이 포함
- 카운츠(Counts)는 진보주의교육이 아동 개인의 흥미와 능력에만 강조를 두는 나머지 사회적 지침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였음.
- 이와 같은 비판을 통해 미국에서 대공황기를 전후한 시기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중심학교 운동이 등장하였음.

### ○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

- 학습은 지역사회에서 비로소 생기를 갖게 됨(올센1973: 17). 학교는 본래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사회가 설립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외딴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김종서 외, 1991; Longworth, 2003 : 122).
- 지역사회를 학습의 장으로 보고, 학교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장소인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만 함. 학교는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한 기관으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학생은 성인이든 아동이든 간에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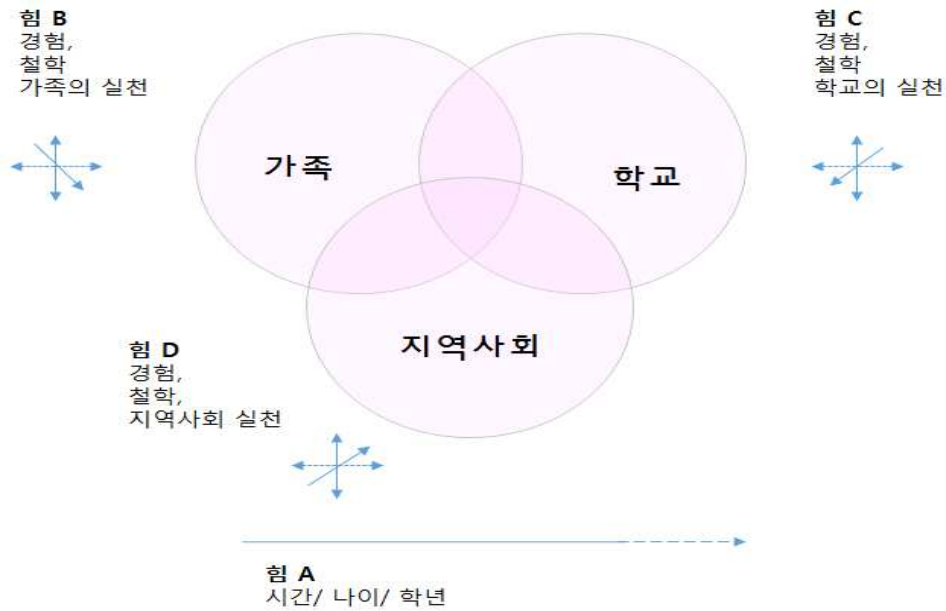
[그림 - 1] 학교와 지역 사회의 관계

자료 : Decker(1972 : 14-16)

### ○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관계 모델

-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연구(L. Epstein)에서 어떠한 요인이 세 주체의 중복이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함.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중복과 연계는 세 가지 영향력에 의해 결정 됨 : 시간, 가족에서의 경험, 학교에서의 경험





[그림 - 2] 아동의 학습에 있어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합치 구역  
(외부 구조적 이론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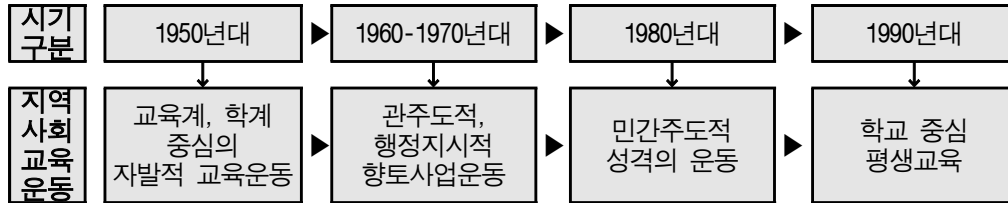
자료 : Epstein, L(2001). Theory and Overview in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p. 28

- 힘 A는 학생, 가족, 학교를 위한 발달 시간과 역사를 의미 함. 이때의 시간은 개인과 역사적 시간을 의미함 : 아동의 나이와 학년 단계, 학교에서 학생이 재학한 동안 사회적 조건
- 아동은 최초에 가정에서 가족이 제공하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받으며,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학습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하지 않음. 그러나 유아라 할지라도 이 때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유아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 감정적으로 장애가 있을 때, 부모와 특수교사는 아동을 위해 조직적인 협동 프로그램을 시작함
- 모든 아동들에게 부모는 아동 양육과 학교 준비에 있어서 책, 그들의 학교 경험, 소아과 의사, 교육자,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적용함. 아동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면 중복 영역이 발생 함
- 가족과 학교가 중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족이 진정한 ‘파트너’로써 빈번한 협력적 노력과 부모들이 많은 유형의 통합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사이에 분명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을 때 가능해 짐. 그러나 여기에 ‘완전한’ 합치는 발생할 수 없는데, 이것은 가족은 학교나 교사의 프로그램에서 독립적인 특정한 기능과 실천을 하며, 학교 또한 가족과는 독립적으로 어떠한 기능과 실천을 유지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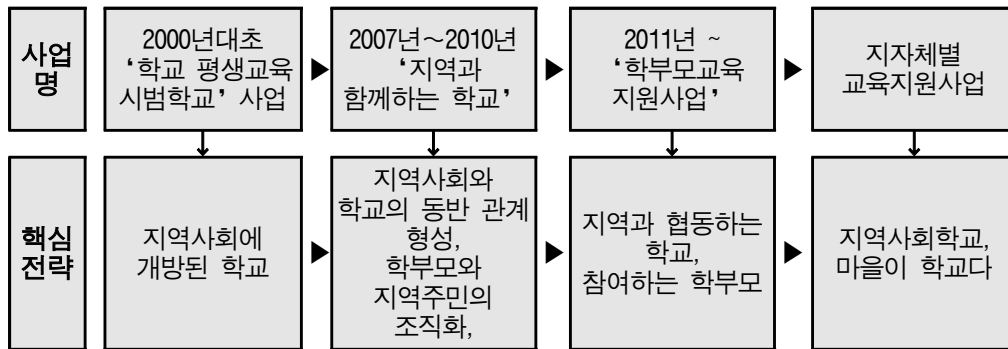
### 3. 한국의 학교와 지역의 협력의 전개 과정

####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역사

- 학교, 마을, 지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학교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1990년대까지 지역사회교육운동의 형태로 추진됨



- 2000년 대 이후 지역사회교육 운동의 맥락에서 중앙 정부의 시책사업이 시작되고, 현재 지방정부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이어져 옴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지향하는 사업의 핵심 전략은 역사적으로 학부모 교육, 학교 개방, 지역사회와 학교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한 교육력 증진에 있었음

####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도입 경과(교육청)

-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도시 전체의 교육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기본 개념으로 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적은 ①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교육 시스템 구축, ②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사회 기반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③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로 미래역량 인재 육성, ④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제고임
-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과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시·군 또는 시·군의 일부 지역(구역)을 의미하며, 혁신교육지구는 “지역교육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은 협약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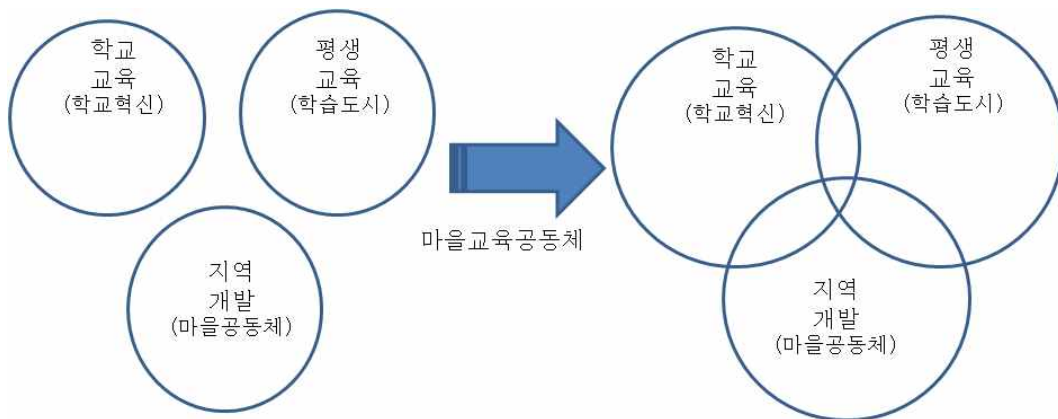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는 협력 사업임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의 확장

-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과 함께 주민과의 협력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경기도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추진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진보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와 사업 추진이 시작되는 정책 개념으로 충청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 충청권에서도 관련 사업을 도입하고 있음
- 이는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출발하여 지역마다 고유한 명칭과 방식으로 지자체와의 거버넌스와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음

○ [학교교육](평생교육)(지역개발)분절 ⇒ 학교혁신 × 학습도시 × 마을공동체

- 현재 각각의 주체에 의해서 분절된 사업 : 각 영역별로 새로운 정책과제들이 제안되고 있음. 학교교육에서는 혁신학교에서 시작된 혁신교육,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학습도시 사업, 지역개발 영역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각각 추진중
- 학교혁신과 학습도시,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연계·통합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그림 -3 ] 연계와 통합을 통한 마을공동체

### Ⅲ. 아동과 주민의 전 생애적 마을교육공동체의 과제<sup>2)</sup>

#### 1. 혁신교육과 지역 평생교육과의 연계

##### ○ 지역사회 토대적 역량과 관련된 총체적 관점 필요

- 그 동안 공교육의 성과와 책임이 주로 학교제도의 효과성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내재된 있는 토대적 역량과 결부된 총체적인 관점이 부각될 것임.
- 따라서 학교, 지역사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 마을교육자본 축적

-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지역의 교육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부모, 교사, 민, 관 등의 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
-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교육생태계를 이루어야 함

##### ○ 평생교육과의 연계

-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교육과 청소년 교육이 상호작용하여 시너지(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평생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청소년 교육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야 함

##### ○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혁신교육 지구 사업의 연계

- 기존의 학교만으로는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교육의 영역으로 지역 교육 역량을 강화함
- 그러나 현행 마을교육공동체 한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학교와 마을 연계 가능

2) 교육부 정책 과제인 양병찬, 김용련, 이진철, 조운정, 전광수, 이유진(2019). 혁신교육지구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체제 구축 방안 연구의 정책 과제 부분을 본 연구에 맞추어 재편집하였음을 밝힙니다.

사업이나 유관 업무간의 통합·조정 필요함

-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도시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 학교 관련 평생교육 조항(평생교육법 30조와 31조)의 개정 통해 다양한 대안적 학습욕구의 수용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학업중단청소년을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 학습자들의 대안적 교육과정을 제공
- 현재 전통 학교와 지역의 교육 사이에서 틈새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배움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경기도 몽실학교, 경남 행복마을학교 등)
-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좋은 직업교육 환경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통폐합 학교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함

## 2. 교육자치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교육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조로서 교육거버넌스

- 우리 사회가 점차 복잡하고 양극화 및 이원화가 심해지며, 사회 가치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교육적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효율성 위주로 강조된 전통적 교육 정책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효과성, 일관성, 유연성, 책무성, 합의성’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갈등 해결도 필요하겠지만 합의를 통하여 중장기적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

○ 주체 간 공동의 관점 확보

- 거버넌스 체계 안에 포함되는 모든 주체들 간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이해방식 및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빈번한 소통과 학습이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일어나야 함
- ※ 실제로,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중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지역 발전이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일차적으로, 정례화 된 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음.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주체 간 공동의 관점 확보를 위한 연수를 각 수준별로 기획·운영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 각 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토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만들게 될 마을교육공동체의 하나의 상(狀)을 설정하고, 공동의 관점에 따라 일관되게 세부 사업을 실행해야 함

### ○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 연계, 행정과 민간의 연계, 아동·청소년 교육과 주민교육과의 연계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영역들 간의 결합이 요구되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를 둘러싼 주체 간 이해관계의 갈등이 나타나 연대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각 영역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 상호 간 충분한 논의와 공동의 경험 획득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논의를 자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함

###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넘어

-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그 동안 교육의 변방에 있던 일반자치(지자체)를 이제는 명실상부한 교육주체로서 세웠다는 점임. 앞으로 협력적인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뛰어 넘어 교육, 문화, 복지 등 각 관청 내부의 다양한 사업 및 영역 간의 유기적 통합도 이루어져야 함.
-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함. 지역교육을 위한 주민자치가 참여해야 비로소 완전한 교육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지역단위의 교육민회를 설치·운영하여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양병찬, 2014).
- 교육민회의 구조는 일단계에서 지역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실천 단위로 중학교구(중학교 1 + 초등학교 2-3개의 교육네트워크) 교육민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읍·면·동 단위와 유사한 범위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육민회가 확장되어 구성되어야 함

## 3. 시민 참여 기획의 '마을' 교육자치

### ○ 학교를 위한 지역 자원 동원이라는 인식의 한계

-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확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 참여의 교육자치를 강조

- 시대 변화 등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육계에 새로운 전략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제시되고 있음. 여기서는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
-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지역사회의 돌봄과 교육을 과제로 ‘아이’로 제한함. 그동안의 실천에서 마을과 학교는 양자 대립적 관계로 해석되었고 지역 자원을 동원하는 학교 지원 사업으로 인식되어 학교 ‘우선적’ 관점과 학생만을 ‘성장’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했음(양병찬, 2018: 126).

○ **최근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논점**

- 자치적 공동체로서의 마을(Swaraj)을 전제로 오늘날 한국의 지역개발과 지역교육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범위는 어디인가? 행정적 책임(예산과 인적 확충 포함)으로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교육적 의사결정과 논의 구조의 범위는 중학교 단위의 학구(學區, 최소 생활권, civic minimum)를 제안. 이는 주민자치회의 자치 경계와도 거의 일치함(예, 일본 가와사키시의 교육자치 실험 : 교육자치회의)
- 교육 대상(주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의 한계는 교육자원을 소비와 생산으로 보는 이분법에 갇히게 됨. 아동과 성인들의 관계 속에서 교육의 주체를 확대해야
- ‘학교를 위해’ 마을 자원 동원을 했지만 학교로 들어오는 예산의 흐름으로 인해서 학교에는 여전히 행정의 짐이 추가되는 모순 → 학교의 것(본질적인 것)은 학교가, 지역의 것은 지역이 역할을 담당(양병찬, 2018)
-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교육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청소년 활동 사업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업들의 분절성도 마찬가지이지만)과 서로 무관하게 진행 중

○ **주민 참여 기획의 원칙 : 모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과 결정권한은 지역사회에 존재**

- 모든 인간은 생활세계인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게 됨. 이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 및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임
- 결국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지역사회에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정 권한도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하는 것임
- 지역과 주민의 “교육 참여는 기획에서부터”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 결정의 권

한에 시민 지배의 구조를 만들어야

#### 4. 교육 자치의 상호 배움과 공동 실천

##### ○ 상호배움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김용련, 2014)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이’ 중심에서 상호 배움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위해 교육 자치라는 관점에서 상호 배움과 공동 실천을 강조
- 첫째는 서로 배우는(상호 배움) 주민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음. 배움은 개인적 특면에서의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 학습을 통한 변화 속에서 성장 가능성을 논할 수 있음.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학습을 통해 구축하는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성장과 재생의 기반이 되며, 공동체 안에서 주민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두 번째는 마을의 주인공인 주민이 함께 마을을 만드는 공동 실천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마을의 주인은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이기 때문에 마을의 성장과 미래는 그 안에서 일생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결정됨. 따라서 마을의 미래와 재생은 살고 있는 주민에서부터 구상이 시작되어야 함.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이 아닐 수 없음

##### ○ 공동체로서 마을의 자생적 구조 형성(마을 단위 배움을 기반한 공동체 형성)

- 작년부터 시작된 시흥의 교육자치 모델 구축에 관한 논의는 한국 교육자치의 역사에서 놀라운 진전임. 주민 스스로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를 결정하고 행정 지원체계를 재편할 수 있다는 주민 통제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임.
- 공동체로서 마을은 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내어 지역사회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생적 구조를 만들어야 함. 개별 마을 하나 하나가 배움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결국 이들이 연계·융합하여 지역 전체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임

##### ○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과제가 교육적 과제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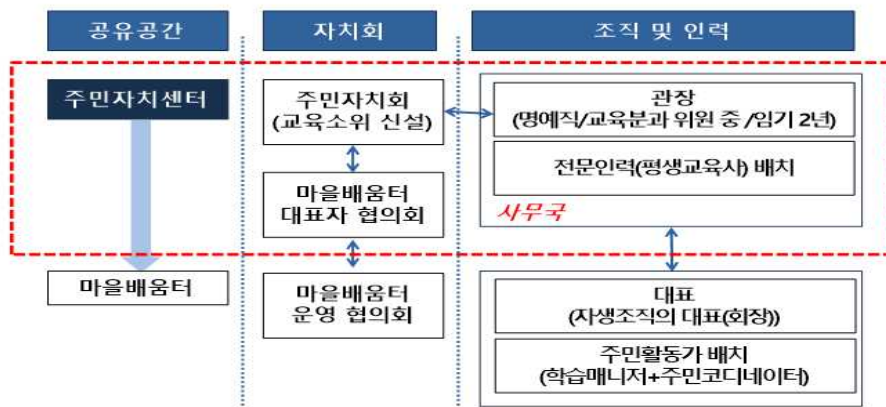
- 마을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다양한 인·물적 자원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과제가 교육적 과제로 연계되어야 함.
- 주민들 스스로의 공동 학습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함께 나누어가



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을 때, 마을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교육자치의 의사결정 구조 : 마을단위에서의 공유공간과 공적조직 창조

- 이를 위해 교육자치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최근 주민회의 혁신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 <교육 소위원회>를 두어 지역 교육 의제를 제기하고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주민 교육 전체를 기획 운영 평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마을 단위에서의 공유공간과 공적 조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와도 연결됨. 이러한 학구 단위의 교육회의 위원장들이 모여서 지역 전체의 교육협의회를 결성하여 심의 기구역할을 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시군 단위의 교육장이나 교육자치회의 의장을 시민들이 선출하여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있음. 전 단계에서 공모제 교장과 같이 <공모제 교육장>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용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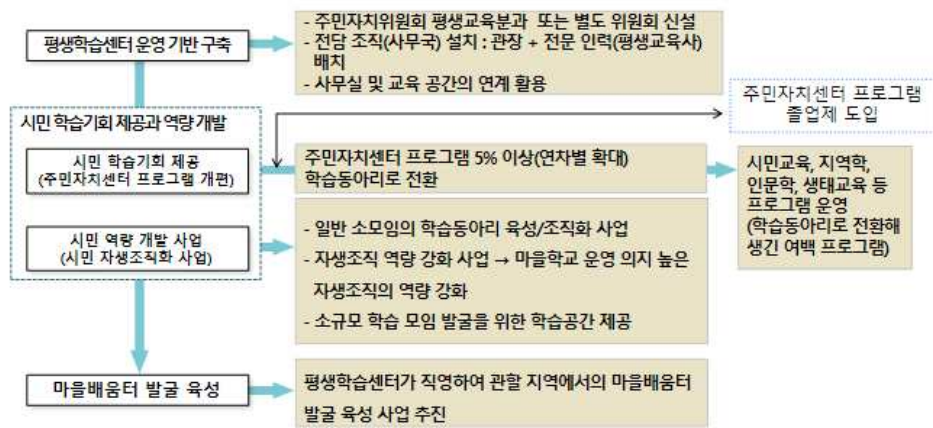


[그림-4] 마을단위에서의 공유공간과 공적조직

○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협업 모델에서 '주민교육' 영역의 검토

-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체 형성의 핵심 부분인 주민교육 영역이 부재함.
-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의 개인화·사사화(私事化)를 공공화 할 필요가 함.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65%가 문화·교양교육으로 이를 복합형 생활권의 시민교육센터로 전환하여 시민교육, 교양교육, 직업교육의 종합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회 구성에 교육분과(15명 이내, 임기 2년(연임 가능))를 넣어서 교육민회가 실제 행정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생활권 단위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여 마을 주민 참여 확대함

- 주민 대상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마을주민 기준을 완화하고 수업료 지급 등 별도 세칙 마련
  - 마을의 다양성에 기반한 주민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량권 부여하되, 예산에 대한 권한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가칭) ‘00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무료교육)
- 기초자치단체 단위 평생학습관 지원과 연계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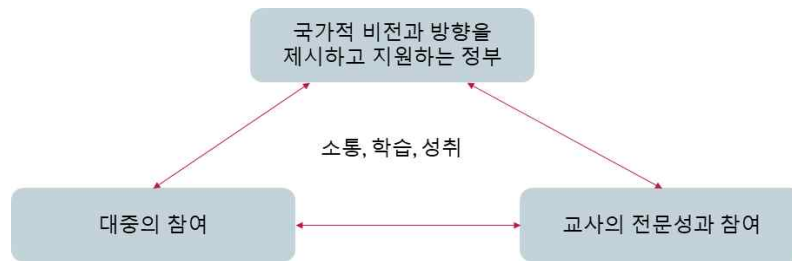


[그림-5]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운영모형

## 5. 주민 통제의 교육거버넌스

### ○ 교육자치를 위한 주민통제 거버넌스

- 현재의 다양한 수준의 형식적 협의체로 지역사회교육협의 구조가 구성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지역 교육의 의제 제안과 예산 심의를 위한 협의 구조가 요청됨
- 이는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하그리브스와 셸리(2015)가 주장하는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참여하는 시민 육성을 의미함. 그들이 제안한 제4의 길은 새로운 시대에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큰 방향을 제시 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고 지원하는 정부, 교육적 사명과 열정으로 무장한 교육자, 참여하는 대중, 이 삼자가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그림 VI-2] 학교교육 제4의 길

출처: 하그리브스와 설리(2015: 174)

- 원래 교육자치는 지역 주민(lay man)에 의한 교육 통제를 의미하던 것으로 교육 생태계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민·관·학 협치 체제 운영을 위한 교육자치 개편 필요
- 시·군·구 단위의 선출직 교육장(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업의 기본 조건을 갖추
-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실제적이고 상시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는 상태
  - 학구 단위의 주민자치 + 행·재정 권한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자치행정기구
    - ① 마을교육민회(教育民會, 주민자치회 내의 교육분과 기능) + 시 차원의 교육자치회의
    - ② 중기적으로 시·군 단위의 교육장 선출직화 혹은 공모, 교육자치회의 의장 선출
    - ③ 현재의 행정 연계 사업은 하나의 통합된 센터에서 학교밖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들(방과후, 진로, 교육복지, 학부모 등의 사업 등)을 연계·통합 운영

#### ○ 지역 '교육민회(教育民會)(가칭)' 구축

- 보다 기초적인 수준으로 학교단위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민회'를 구축하여, 주민과 교사가 같이 마을교육의 문제를 논의하고 기획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 교육 논의 구조를 국가가 독점하여, 지역의 교육적 관점이나 의견은 부정되거나 배제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교육민회를 구성함으로써 근본적인 주민 교육자치의 토대 마련이 필요한데 주민 교육회의 구성은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교사와 주민, 행정의 협력하는 공적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임

- 교육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련 부처와 학교, 주민 협의체의 연계 사업에 대한 구상, 계획, 실행을 함으로써 학교로부터 동원된 학부모 학교 참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임. 이처럼 지역의 교육적 논의 구조가 있는 것은 지역의 교육 과제에 대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점 유지와 역할 담당의 힘을 가짐. 이는 현재 학교장의 리더십에만 의존해 학교 운영이 좌우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전체의 교육적 의지를 견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것임

**학교 수준의 지역주민과 교사 간 협의체 구축: 일본 시나가와 커뮤니티 스쿨 교육협동위원회**

- 구성: 주민(등장 등), 동문, 학부모, 대학교수 등(위원장도 주민 중에서 선출)
- 예산 지원: 시나가와부 교육위원회와 국가(문부성)에서 지원
- 운영 횟수: 매년 8~10회
- 역할: 커뮤니티 스쿨 목표 공유, 과제 협의, 기본 방침 확인,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 등
- 주민 선출 방식: 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중 공모

○ 지역의 현안 교육문제의 지역 의제화

- 지역의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돌봄체계 등의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의 관심을 촉발시켜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함. 이는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특성의 활동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를 높여 이에 대한 지지와 '손보태기'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서 그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임
- 과제로 예를 들면, 방과후교육 활성화를 비롯하여, 아동 안전, 보육, 청소년의 건전한 교류, 빈곤 청소년 지원, 이주민들의 교육문제, 생태·역사·문화 자원화 등의 지역 과제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지역 과제를 의제화 하고, 사업화 및 학습과제화 하여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의 촉진과 함께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전개,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자료 개발·배포, 지역 언론 등과의 공동 홍보 등의 활동이 요청됨

○ 기능적·실질적 합리성을 보유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자율성 부여

-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설정한 위와 같은 수준별·단계별 접근은 기능적 합리성을 추구함. 즉,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구상임. 그러나 기능적 합리성에만 집중할수록 실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중심의 실질적 합리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실질적 합리성이 기능적 합리성에 압도될 때, 우리는 '왜'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일방적 제안 보다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수준별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참여 범위 역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자율성을 고려한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능적·실질적 합리성을 보유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음

#### IV.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전략

지역사회는 삶의 터전이나 배움과 실천의 장이며, 학습은 지역사회의 토양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에서의 학교 등 유관 교육 자원 간의 연계 미비, 총체적 학습 지원 구조 취약 등으로 인해 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성 회복의 노력은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교육공동체 정책 추진이 요청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 회복 및 지역공동체 복원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공동체 구축의 양대 축은 학교와 지역사회인 바, 이들 간의 교류 협력과 개방, 자원 활용, 교육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분담과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안한다.

##### 1.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청과 지방 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

######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 연계를 위한 조례」 제정

-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학교 개방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교육 관련 조항을 삽입한다.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시설 등의 이용’(제11조) 조항과 평생교육법의 ‘학교의 평생교육“(제29조)<sup>3)</sup>와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제30조) 등의 조항들과 연계하여 그 개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와 지역 연계 지원조례’ 혹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평생교육법 제29조 4항의 경우는 학교 개방의 경우 개방 시기에 대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학교와 지역의 연계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전제로 한 ‘학교와 지역 연계 지원조례(혹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조례)’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단위의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

3)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항을 규정한다.

- 학교-지역연계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학교와 지역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학생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법을 제정함. 이는 현재 학교의 개방 문제를 비롯하여 그에서 발생하는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법적 책임의 문제 등 지역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돕는 지역적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제시함.
- 이 조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교육감의 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기본계획 수립, 학교-지역 연계 사업의 내용과 범위,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라는 사업의 내용적 속성을 고려하여 현재 학교정책과의 학교혁신지원센터가 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전담하고, 기초자치단체 별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신설

○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구축 :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학 협치 체제 운영(지역교육회의)

- 목적 : 교육문제 있어서 다양한 교육주체가 지역문제와 학교 문제의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 의사결정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내용
  - 행복교육지구 협의회 운영, TF팀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 중간지원조직 연수
  -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및 견학, 학부모 및 마을 주민 모임 지원·활성화
- 방법

마을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및 역할 :마을별 마을 교육 현안 협의 및 해결 방안 모색,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기획 및 추진 협의 등</li> <li>· 구성 :학교, 읍.면.동 행정기관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li> </ul>
마을교육활동가 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및 역할 :마을에서 활동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애로사항 등을 논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마을교육 활동가의 역할과 참여 등에 대한 협의 등</li> <li>· 구성 :마을교사, 교육봉사자, 재능기부자 등 실제 마을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li> </ul>

## 2. 지역과 학교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사업 통합 운영

### ○ 중앙 부처의 아동·청소년 생활·교육 지원 정책의 재편

- 교육지원청 단위나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은 크다. 위센터 사업과 방과후학교 사업, 진로체험·자유학년제 사업, 학력향상 사업, 학부모지원 사업, 평생교육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서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 교과 교육과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상의 다양한 사업들을 동일한 체제 하에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문가들도 상담, 복지, 평생교육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융복합적 협동이 가능해진다. 교육이라는 재화는 한 사람에게 주나 열 사람에게 주나 동일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
-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드는 재화를 현명하게 나누는 원칙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하달되는 다양한 사업들의 분리 추진과 교육 내부의 혁신적 변화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새로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의 연계 사업의 정체성에 따른 목표체계의 재설정과 함께 사업 간의 연계와 통합, 업무 지원의 보편화를 통한 행정 간명화, 전문 인력의 다양한 전문성에 대한 융합 등의 교육지원 영역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진로 지원의 체계화를 통한 사교육비 증대 문제에 접근 필요
- 단편적 직업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개편하면서, 여성가족부 중심의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을 체계화하여 청소년의 진로 탐색 단계의 새로운 구상 필요
  - 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지도(진로 탐색 및 체험의 일상성, 다양성 확보)
  - ②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진로에 대한 스펙트럼 다양화  
(직업체험만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마련, 봉사, 국제 활동 등) 연계 지원 구상)

### ○ 지역사회교육센터(가칭) 설치 : 시·군 교육지원 사업의 통합 센터 운영

-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사무와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업무 중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야 하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밖의 교육지원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불비한 것이 사실이다.
- 마을과 협력 사업을 한다고 해도 명시적인 조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지역별로 행복교육지원센터(시흥시-교육지원청), 방과후교육지원센터(도봉구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노원구청, 마을이 학교다), 교육통합지원센터(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창

의인재육성재단(오산시 재단) 등으로 다양한 명칭과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 이를 위해서 지역에 하나의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가칭)>를 만들어 전담 인력들이 함께 공동 기획과 역할 분담을 해서 지역의 다양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교육지원청의 유관 사업간의 통합 조정
- 방과후학교나 진로체험, 학생상담체계와의 연계성을 지향하면서 조직 재편
- 유관사업 전문인력 통합 배치를 통한 사업 연계성 강화

### 3. 지역 격차 극복을 위한 농촌 교육지원 사업

급격한 도시화로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함께 학교의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 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될 것이다. 농촌의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교는 마을공동체 손실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 적정 규모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5)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통폐합 적극 유도 및 학생 수 감소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계속 시행한다면 행정 조처(재정 패널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교육의 특별한 지원을 위한 진흥법의 제정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 「농어촌교육진흥 조례」의 제정

- 현재 농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법률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 그 외에는 개별 법령에 일부 조항들이 삽입되어 산발적으로 근거가 마련됨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학생에 대한 혜택이나 교육진흥보다는 교원들에게 수당과 승진점수를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이며, 농어촌의 고등학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임의 조항이 대부분으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실정임
-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교육진흥법 제·개정되기 전이라도 광역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북지역의 농어촌 교육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농촌 학교의 주민 평생교육시설로서의 활용 및 보육·의료 시설과의 연계성)



- 농어촌 교육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의 근거(방과후교육 등)
- 지자체의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관련 사항

○ 작은 학교 육성 정책 추진(통폐합 → 육성으로)

- 초등학교는 1면(面) 1교(校)유지(농어촌서비스기준에 '절대 학교')
- 농어촌 소규모 적정학교(작은학교) 모델 개발 지원 : 기존의 「농어촌돌봄학교사업」의 부활하여 미래형 생태학교 모델 확산
- 현재 추진 중인 「기숙형 중학교사업」 중단 : 인근의 2-3개의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으로 신축 이전하는 모형은 비용 편익도 낮으며 가정과의 분리 등의 문제 있음
- 교사 배정 및 학교운영비 지급 방식의 개악을 통해서 농어촌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곤란케 하는 조치의 재검토

○ 농어촌학교 방과후교육 사업의 공적 지원

- 현재 농어촌 방과후학교 바우처(학생 수강권 지원) 사업 → 농촌 지역의 상황에 맞는 완전 공공 방과후 교육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서 농어촌 방과후교육 지원 사업의 일원화 혹은 통합화 필요
-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촌 특성이 반영된 방과후교육 모델 개발(생태 환경, 진로교육 등)
- 여성들의 일자리와 연결 → 귀촌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방과후 교육 강사 참여 촉진

○ 도시와 차별화된 농어촌 평생교육 모델 구축

-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을 위한 면 단위의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 현재 농업 영역 지원을 넘어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지원 필요. 즉 농촌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평생교육에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 필요함
- 모든 농촌 주민과 농민의 평생교육은 저변의 농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리더나 마을기업가를 육성함
- 평생교육 요구가 높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입 전략으로서 평생교육 기반 확충 필요함
- 귀농 귀촌 여성의 역량을 활용한 농촌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평생교육 출장 강좌 운영 : 주민들이 기관으로 모이는 전략이 아니라 지역으로

찾아가는 전달체계가 요청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마을회관이나 보건지소 등의 공간을 활용한 마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농어촌 주민의 저학력 해소를 위한 한글교실 및 기초학력보완교육 운영

- 무학자나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청양군 2008년부터 10년 간의 문맹자 제로 프로젝트 추진)
-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학력보완교육에서 3년 과정으로 초등학력 인정함. 이를 농촌 초등학교의 새로운 기능 부과함
- 여러 지자체(서산, 청양, 진안 등)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고학력 여성을 「문해교육사」(국가 자격)로 양성하여 지속적인 성인기초교육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촌 여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음

#### 4. 지역공동체교육의 기반으로서 평생학습체제 강화

○ 시·군 단위 평생학습관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연계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허브 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현재 평생학습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 개선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성인들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종사자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메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역 연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독일의 시민대학이나 일본의 공민관, 호주의 지역사회성인교육센터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 사회에 학교 외의 교육기관이 학교의 방과후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마을교육공동체)의 맥락에서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진행 중임. 자치구별로 사업 진행 여부와 발전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담당 부서와 기관 역시 상이하지만 큰 틀에서 평생학습관과의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혁신교육지구 및 자유학기제 사업의 내용에서 지역 사회와 학교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요구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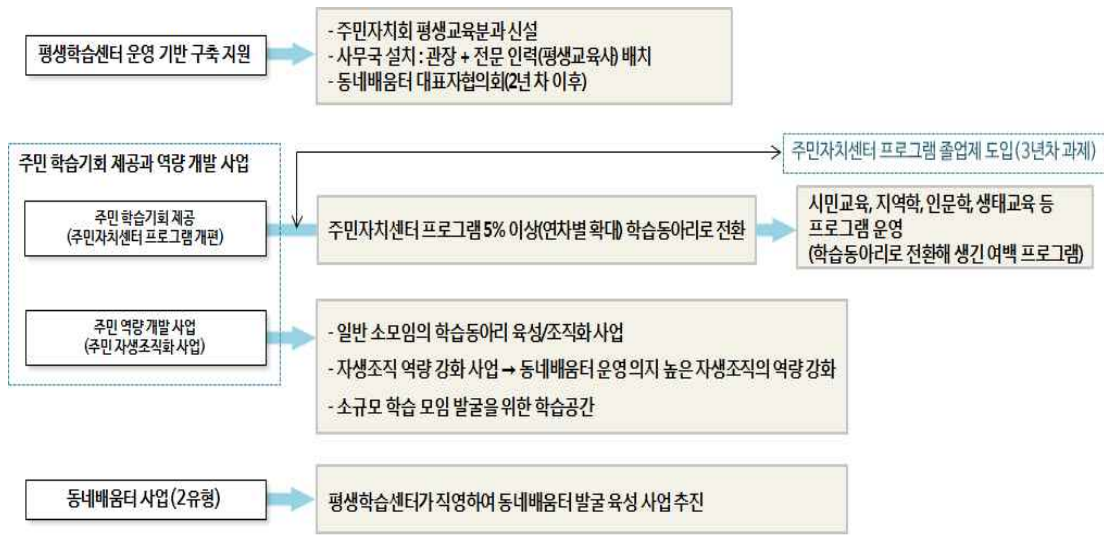
시·군·구 평생학습관과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의 관계

구분	평생학습관의 관련 사업 활성화			진로체험 지원센터	혁신교육 지구
	평생학습 센터	주민자치 센터	마을 학교		
사업 내용	마을 단위 평생 학습 공간 및 문화 조성	자발-자치- 자생의 학습 문화 지원 조직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환경 조성	중학교 1-2학년 자 유학년제 지원 진로체험지원 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공교육 혁신 마을교육공동체)

○ 동단위의 주민 공공 교육공간(평생학습센터)의 구축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자치구별로 1개의 평생학습관(1도시 1학습관)을 설치하여 도시 전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관련 기관의 연계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습도시들은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관화’를 전제로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린 생활권에서의 학습 기회 제공 기관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선진적 학습도시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개칭하여 생활권 평생학습센터로 개편하였다. 주민자치학습센터(이천시), 문화교육센터(과천시), 주민학습문화센터(대덕구) 등이 그것들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 전문 인력 배치 노력도 함께 하고 있어 평생교육행정이라는 관점에서는 근거리 생활권의 새로운 교육지원 구조 만들기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네스코의 지역사회학습센터 (Community Learning Centers, CLC) 사업과도 연결되는 구조라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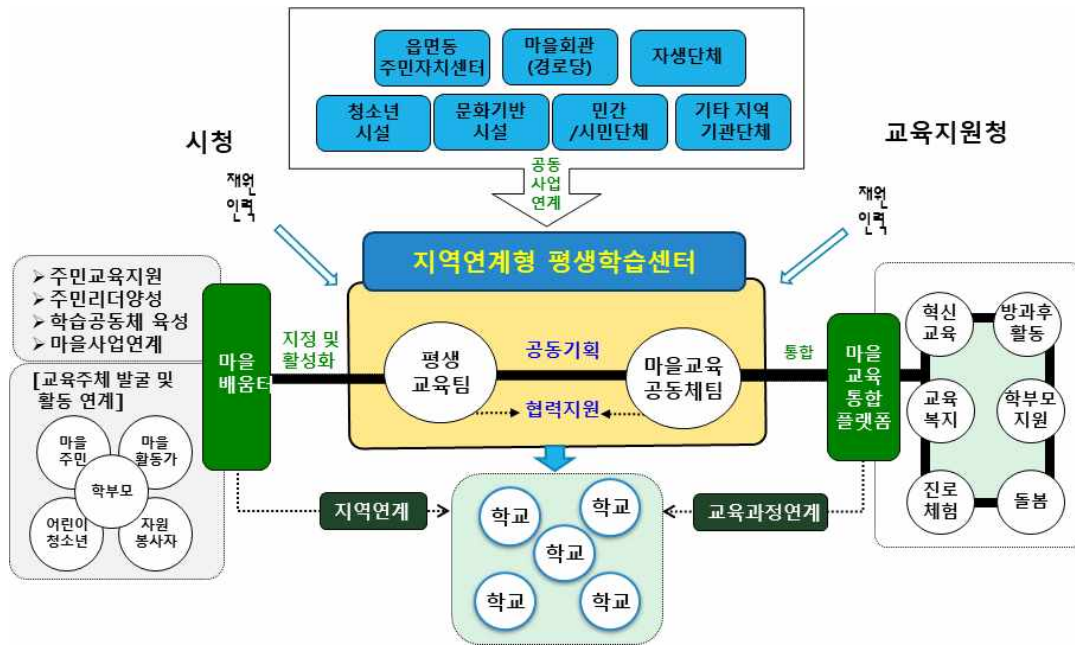
-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협업 모델에서 ‘주민 평생교육’ 영역 검토 없음 :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체형성의 핵심 부분인 주민교육 영역 부재
- 주민자치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의 私事化를 공공화 필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65% 문화·교양교육 => 복합형 생활권 시민교육센터로 전환 시급(시민교육, 교양교육, 직업교육의 종합화)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생활권 단위 평생학습센터로 설치
- 운영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내 평생교육분과(15명 이내, 임기 2년(연임 가능))



-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생활권 단위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여 마을 주민 참여 확대
  - 운영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내 평생교육분과(15명 이내, 임기 2년(연임 가능))
  - 주민 대상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마을주민 기준을 완화하고 수업료 지급 등 별도 세칙 마련
- 마을의 다양성에 기반한 주민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량권 부여하되, 예산에 대한 권한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가칭) 'OO동 평생학습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무료교육) 기초자치단체 단위 평생학습관 지원과 연계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 5. 학교와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합한 '지역사회학습센터' 의 구상

- 교육청 차원에서의 문제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이어져 방과후학교지원을 비롯한 교육복지, 학부모교육, 학습부진아지원,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사업 코디네이터들이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각 분화되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함
- 이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지역사회학습센터)'로 통합해서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때 기존에 학교 밖에 존재하는 교육센터인 평생학습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등의 기존 교육자원을 통합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이는 관련 제도의 연계라는 시설 설치 목적 관련 통합뿐만 아니라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반듯이 검토해야 하는 과제임



- 이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시설에 교육지원청의 기구 방식의 조직을 복합화하여 사업들간의 연계와 예산의 연결, 전문성의 통합 등을 이루어갈 수 있음
  - 교육부 또는 지자체가 정부의 생활SOC사업을 활용하여 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이와 함께 학교 교사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 전문적 책임도 분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전문 인력들(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통합적 전문성도 이러한 과정에서 재구성되어야 함. 지역사회에서 교육적 전문성이 성장하여 학교와 지역의 전면적 관계를 재구축 할 수 있도록 이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중심 과제로 공유되어야 할 것임
- 위 모형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되, 이 공간에서는 주민의 교육과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각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연계·협업해야 함
  - 교육지원청은 마을교육공동체팀의 주축이 되어 마을교육관련 정책 사업(혁신교육, 방과후 활동, 교육복지, 학부모지원, 진로체험, 돌봄 등)들이 통합되는 마을교육통합플랫폼을 형성함
  - 기초지자체는 평생학습팀이 주축이 되어 주민 교육의 마을공간 거점으로서 ‘마을배움터’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운영인력 양성 및 배치,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지원, 교육주체 발굴 및 활동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학습센터는 지역 내에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공동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학교와 마을이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각 주체들의 협력과 지원을 토대로 학교는 마을 단위의 배움 거점으로 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학습센터에서 성장한 다양한 교육주체와 교육컨텐츠들을 교육과정 속에 연계하도록 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일상의 마을학교 운영 : 학교·지역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 목적 : 학생·학부모·시민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학교를 발굴·운영 하여 일상의 마을교육 실현
- 내용 : 학교 밖의 창의적 체험활동 전개, 자유학기제 시행 확대 등에 따라 마을을 연계한, 마을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게 됨.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활동가나 전문직업인 또는 재능을 가진 지역 주민을 마을교육활동가나 마을 교사로 양성하여 마을교육에 참여하도록 함
  - 마을교육활동가(마을교사 포함) 연수
  - 마을교사 양성 및 풀 구축
  - 마을교육활동가(마을교사 포함) 네트워크
  - 마을축제 지원

○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내 ‘마을배움터’ 조성

- 소규모학교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배움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주민 모두의 학습공간으로 재창조
- 주체별 역할 분담
  - 교육청 및 학교: 유휴교실 제공
  - 지자체: 예산 지원(※ 필요한 경우 인력 지원)
  - 학생 및 마을주민: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및 참여
- 마을배움터 공간은 일과 시간에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일과 이후에는 학생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도서 공간, 학습 공간, 활동 공간 등)
- 이를 통해, 주민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주민과 학생, 주민들 간이 서로 ‘마을 배움터’에서 만나고 교류하며, 교육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마을배움터’에 참여하는 주민과 학부모가 성장하여 향상된 역량을 발휘하여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침으로써 한 아이를 교사와 부모뿐만 아니라 마을이 함께 기르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 학부모는 다시 또

성장하게 될 것임. 곧 마을주민(학생, 주민) 모두의 평생학습이 이루어짐

**광주 화정1동 무늬만학교 마을커뮤니티공간 '있다' 사례**

- 학교 내 유휴공간에 마을교육공간 마련
- '있다' 라는 이름은 학교와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의미임

<공간 조성 과정>

- 공간 장소 마련 :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내어줌
- 예산 마련 : 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하여 예산을 마련
- 공동 작업 : 공간조성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선진기관 견학, 디자인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 교사, 주민, 대학(교수+학생)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이루어짐



학교 내 유휴공간



디자인워크숍



마을커뮤니티공간 '있다'



※ 출처: 양병찬·한혜정(2018). 화월주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실천연구. 지역교육공동체연구소

**일본 요코하마시 사회교육시설 '커뮤니티 하우스' 설치 사례**

- 1988년 요코하마시 평생학습 기본구상에 기초하여 1990년부터 초·중학교의 여유 교실을 활용하여 학교시설 활용형 커뮤니티 스쿨을 7개 설치, 이후 학교밖에도 유사 시설 설치로 인해 명칭을 '커뮤니티 하우스' 로 변경
- 빈 교실을 활용하거나, 학교시설의 신·증축 등과 병행해 정비하는 학교시설 활용형 / 청소년 도서관 등의 기존시설 전환형 / 다른 공공시설과 합쳐서 정비하는 공공시설 병설형 / 용도폐기 된 공공시설 활용 등의 시설 정비형이 있음
- 시설 규모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시설은 교류기능을 비롯하여 학습·집회 기능, 사무서비스 공간이 있어야 하며, 지역의 요구와 시설의 정비 상황에 따라 도서관 기능, 아동육성 기능, 주방 기능, 공예 기능 등을 갖추는 경우도 있음
- 중학생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고, 때로는 중고생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하여 어린이 축제를 돕기도 하고, 노인들에게 보이스피싱 강화를 중학생들이 강사가 되어 운영하기도 함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아동들을 위한 책임어주기 강좌]

○ 학교복합화 시설로 '마을배움터' 공간 신설

- 학교부지 내 또는 신설학교 부지에 새롭게 나타난 여유 공간에 일종의 학교복합화 시설로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는 방식
- 주체별 역할 분담
  - 교육청: 학교 부지(일부) 제공
  - 지자체: 마을배움터 건축 설립 재원 제공

- ‘마을배움터’에서는 도서관, 마을카페, 방과후 센터 등의 복합적 기능을 담당하고,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함

○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마을)공간을 ‘마을배움터’로 재창조

- 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역의 공공시설을 ‘마을배움터’로 리모델링하거나, 학교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건물을 지자체가 임대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간으로 조성
- 농촌지역의 경우, 대개 학교가 면 지역 생활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공공시설이나 사용하지 않는 빈 건물 또는 공간이 있음
  - ※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설치된 고산청소년센터 ‘고래’도 지역에 비어 있던 ‘농협 창고’를 주민 요구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사례임
- 이런 공간을 지자체나 생활형 SOC 사업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마을배움터로 조성

## V. 긴 호흡의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주민의 역량 향상

이 글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도 지역 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적 협동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요청되는 주민의 사회참여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체제 협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매개하는 평생교육의 영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마을학교도 이러한 목표를 갖는다.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지역사회적 돌봄과 교육에 의해서 교육복지는 완성될 것이다. 마을의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지역의 과제(교육적 과제 포함)에 참여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학습이 일어나서 지역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에서 퍼트넘이 이야기한 선한 이웃과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지역은 교육복지의 공간이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즉자적인 대응으로 전환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 문제는 출산



과 출향의 중간을 매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장의 투자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운동인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냥 마을 강사를 빨리 양성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해치우듯 할’ 마을 일은 없다. 운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힘을 키워야 하고 이때 주민의 성장을 위한 기다리는 과정과 그들 스스로 공적 자아와 만나는 시간과 과정으로서 주민의 평생학습이 결정적인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 일을 하는 그 실천 과정이 학습이고 주민들과의 협동의 과정이 학습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지금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한국 평생교육 특성이 새롭게 혁신되어야 할 시점이다. 즉, 지역과제를 학습 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에 뿌리내리는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이 요청되는 것이다.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Freire의 통찰이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주민의 평생학습 간의 긴밀한 협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중요한 명제가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강영택(2012).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연구: 홍성군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4.
- 김경애·김정원(2007).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평생교육연구**, 13(3), 117-142.
- 김기호·김도년·김세용·김은희·박소현·박재길·안현찬·이영범·이윤석·장옥연·허윤주·황희영.(2012). **우리, 마을만들기**. 경기도 고양 : 나무도시.
- 김동택(2014). 사회적 경제로서의 마을학교 : 자급자족 원리의 제도화를 위하여. **시민사회와 NGO**, 12(2), 37-70.
- 김미운(2012). 시민대학, 지속가능한 주민배움터를 향한 상상-마을꾸미기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본 은평시민대학의 가능성-. 제3회 은평평생학습포럼 및 시민대학 토론회 자료집. 은평구 평생학습관.
- 김민(2017).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실천전략: 프랑스 제3차 지역사회교육공동체 사례와의 비교. 제6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 한국 교육복지의 방향과 실천 전략 탐색. 57-82.
- 김민조(2014). 혁신학교 교육거버넌스의 특징과 과제. **교육비평**, 33. 한울. pp. 74-97.
- 김민호(2003). 지역운동 속의 성인학습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화북주공아파트 운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9(2), 21-46.
- 김성길(2004). 배움공동체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7(2).
- 김신일(1998). 교육공동체 형성과 사회교육.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교육공동체 형성과 사회교육」 제16차 사회교육심포지움 자료집. pp. 7-16.
- 김용련(2019). 마을교육공동체 : 생태적 의미와 실천. 살림터.
- 김용련(2015). 지역사회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33(2).
- 김은희(2012). 마을만들기는 운동이다. 김기호 외. **우리, 마을만들기**. 경기도 고양 : 나무도시. 11-39.
- 김종선·박상욱(2013). 시민참여 실천조직으로써 남양주시 평생학습매니저의 확장학습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9(2), 1-32.
- 김종선·이희수(2015).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21(2), 73-107.
- 김종엽·김영선·백혜영·위성남·이경란·정현곤·권복희(2014).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활동가 성장, 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세교연구소·마을인문학네트워크(미간행 정책연구보고서).
- 김진경·민범기·이재준(2013). 수원시 마을만들기 시민교육프로그램의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53-69.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편)(201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전망**. 경기도 : 국토연구원.
- 박상욱(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 - 지역사회 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 학습활

- 동-. 평생교육학연구. 16(2). 145-164.
- 박성현·김정숙·장석준·소숙희·유진아·유경희(201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구조화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박승규·김선기(2016).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지역소멸 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원순(2010). **마을이 학교다**. 서울 : 검동소.
- 서용선·김용련·임경수·홍섭근·최갑규·최탁(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13. 4. 11 제정, 조례 제1033호)
- 서울특별시(2014). ‘주민이 주도하고 직접 운영하는 「마을학교」 사업 추진계획(2014. 4. 9 문건)
- 양병찬(2019).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경계, 그리고 결합. 끝장토론 ‘교육, 혁신에서 자치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시흥포럼, 2019 봄. 시흥시행복교육지원센터. 109-126.
- \_\_\_\_\_(2018). 한국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정책의 상호작용 - 학교와 지역의 관계 재구축 관점에서 -. 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24(3). 125-152.
- \_\_\_\_\_(2015). 마을만들기사업과 평생교육의 협동 가능성 탐색 : 시흥시 ‘학습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21(3). 1-23.
- \_\_\_\_\_(2014ㄱ). 지자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 2(1). 1-25.
- \_\_\_\_\_(2014ㄴ). 혁신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동 :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혁신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비평** 제 33호. 98-120.8
- \_\_\_\_\_(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충남 홍동지역 ‘플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129-151.
- \_\_\_\_\_(2007). 학습도시에서의 주민 교육공동체 운동의 전개.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13(4). 173-201.
- \_\_\_\_\_(2002). 지역을 살리기 위한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양병찬·김용련·이진철·조윤정·전광수·이유진(2019). 혁신교육지구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 교육공동체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
- 양병찬·마상진·유정구·이진철·전광수(2012).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양병찬·김주선·이경아·황정훈(2008).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운영 모형 개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양병찬·이다현·한혜정(2016).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세종교육청.
- 양병찬·주성민·최운실·이희수·김득영·전도근(2003). 건강한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2013). **마을의 귀환 -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을 가다**. 서울 : 오마이북.
- 오혁진(2006).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서울 : 집문당.

- 유민선·강대중(2013). 마을공동체 형성·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성미산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9(1). 143-173.
- 이규선(2012).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엿보다-경기도 시흥시를 중심으로-**사회교육·평생교육의 제도와 실천**. 한일세미나 자료집. 사회교육추진전국협의회·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_\_\_\_\_(2013). 자치의 힘을 키우는 지역의 학습거점 만들기-마을학교에서 싹트는 마을공동체-. 일본사회교육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일본사회교육학회.(일본어)
- \_\_\_\_\_(2017).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참여실천연구 :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호(2013). 한국사회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발전.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편)(201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전망**. 경기도 : 국토연구원. 266-286.
- 정재철(2014). 지속가능복지, 최대고용-최대참여사회로 구현-부양비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넘어. 민주정책연구원.
- 정지웅편(2000). **약한자에게 활력을 주는 두 학문-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조한혜정(2007). 다시, 마을이다. 위험 사회에서 살아남기.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지희숙(2014).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평생학습매니저의 학습활동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제민·김성현·박상연(201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경제학연구 제66-1호』.
- 최혜자 외(2015). 여섯갈래의 마을학교로 가는 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통계청(2018).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 평생교육실천협의회(2014). 2014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성과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시흥시
- 하그리브스 A., 설리, D.,(2015). 학교교육의 제4의 길1.(원전 2009). 21세기교육연구소.
- 한국도시연구소 편(2003). **도시공동체론**. 서울 : 한울아카데미.
- 한상환·장후석·고승연(2014).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제14-21호.
- 姉崎洋一·鈴木敏正(공편)(2002). **공민관 실천과 '지역을 만드는 배움'**. 東京 : 北樹出版.(일본어).
- 小林文人·猪山勝利(공편)(1996). **사회교육의 전개와 지역창조 - 규슈에서의 제언**. 東京 : 東洋館出版社(일본어).
- 鈴木敏正(1998). **자기교육의 주체로서-지역생애학습계획론**. 東京: 北樹出版(일본어).
- 白戸洋(편)(2010). **공민관에서 지역이 다시 살아나다**. 長野: 松本大學出版會(일본어).

- Bauman, Z.(2013). 홍지수(역). **망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서울 : 봄아필.
- Beck, U.(1992). 홍성태(역)(1999).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 새물결.
- Botkin, J. W. 외(1979). 김도수· 김득영· 류순열· 양병찬 공역(1997). **한계없는 학습**. 서울 : 양서원.
- Foley, G.(1990). *Learning in Social Action : A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Informal Education*. London : Zed Books.
- Freire, P.(1972). 성찬성(역)(1979). **페다고지**. 서울: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 Hamilton, E(1992). *Adult Educ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 Greenwood Press.
- OECD(2013). *Better Life Index Country Report*. <https://www.oecd.org/newsroom/BLI2013-Country-Notes.pdf>에 2018년 8월 7일 접속.
- OECD(2017).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에 2018년 8월 7일 접속.
-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how\\_life-2017-en](https://doi.org/10.1787/how_life-2017-en)에 2018년 8월 7일 접속.
- OECD(2017). *Suicide Rate*. <https://data.oec.org/healthstat/suicie-rates.htm>에 2018년 8월 7일 접속
- OECD(2018), *Poverty Gap*.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gap.htm#indicator-chart>에 2018년 8월 11일 접속
- Putnum, R. (2000). 정승현(역)(2009). **나홀로 불링 :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서울 : 페이퍼로드.
- Putnum, R. (2016). 정태식(역). **우리 아이들 -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 서울 : 페이퍼로드.
- Yarnit, M. (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 농촌빈집 활용「청성초등학교 살리기 운동」

이현철 / 前 옥천군 청성면 면장

행정과 지역민이 합심하여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내 유일하게 남은 청성초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문제인 빈집을 정비하여 활력이 넘치는 청성면을 만들고자 함.

### □ 관내 빈집 현황

- 산계1·궁촌리 등 총 80채 ‘2022 상반기 전수조사’ 완료
  - ※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으로 공부상 소유자 확인불가 수량 32건
- 대부분 철거 대상으로서 수리비용 과다 소요

마을당 빈집 수(채)	마을명	소계(채)
계		80
1	산계3, 만명, 서평, 합금, 구음2, 귀평, 마장, 두릉	8
2	산계2	2
3	조천, 고당, 장연	9
5	도곡	5
8	소서, 안티	16
10	산계1, 궁촌, 묘금, 양저	40

### □ 추진개요

- 추진대상: 초등생 자녀가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이주가정
- 주요내용
  - 가용 빈집 발굴 및 수리 지원 (옥천군, 청성면민협의회)

- 주택 임대료 중 연 120만원 2년간 지원 (청성초총동문회)
- 영농희망 가구 토지 소개, 취업희망 가구 관내 기업체 등 취업 알선
- 교육이주가정 간담회 개최 의견청취 및 자치활동 지원
- 교육이주 희망가정 수시 면담 및 청성면 지원사업 안내

#### ○ 기대효과

- 교육이주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농촌 유소년인구 증가에 기여
- 방치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리·활용으로 비용 절감 등 사업효과 증대
- 지역 내 유일한 학교인 청성초교 존립으로 아동복지 증진

### □ 추진현황 및 성과

#### ○ 추진현황

- 2022년 9월 현재까지 13가정 빈집 수리 및 임대료 지원  
(학부모의 집 조성사업, 청성면민협의회 등 가구당 1~30백만원 지원)



- 교육이주가정 부모 직능(이미용업 등) 어르신복지사업 연계 지원
- 교육이주가정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의견 청취
- 초등학생 16명, 유치원생 2명에게 총 240만원의 장학금 지원
- 2021년 출생아 4명에게 각 20만원의 출생축하금 전달



○ 추진성과

- 2021년 이후 교육이주가정 13가구 전입

구분	학생 현황(명)			세대원 (명)	가구 수	전출지역	마을
	유아	초등	중등				
청성	7	17	2	51	13	충주, 창녕, 인천 등지	산계3리 외 6개 마을

- 청성초 통폐합 대상 제외 (초등생 증가 '21년 11명 → '22년 28명)  
 ※ 2022.9.현재 청성초 학생 수 28명 (초등생 23, 유치원생 5)
- 정부 공모사업 2개 선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6억, 국토교통부 85억)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청성초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 2020.12.28.
- 청성초 살리기 기금 모금 결의 : 2020.12.30.
- 산계3리에 첫 교육이주가정 4명 입주 완료 : 2021.03.02.
- 청성면민협의회(번영회 개칭) 발전분과위원회 신설 : 2021.06.03.
- 행정안전부 '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 2021.07.01.
- 국토교통부 '21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 : 2021.08.02.
- 교육이주가정 학부모 간담회 개최 (15~20명 정도) : 2022.02.19.
- 청성면민협의회 임시총회 및 출생축하금 전달 : 2022.03.16.
- 경북 김천 김정숙 님 산계1리 주택 면민협의회에 증여 : 2022.04.07.



- 학부모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확정 (2개소) : 2022.04.25.
- 「제1회 청성면 경관 사진 공모전」 전시회 개최 : 2022.08.10.
- 「제12회 청성면민 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 : 2022.10.01.
- 14번째 교육이주가정 산계1리 증여주택 입주 : 2022.10.
- 「제1회 청성면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 2022.11.

## □ 추진상 문제점

- 교육이주 수요증가에 따른 가용 빈집 확보의 어려움
  - 빈집 소유자의 임대 거부 및 매도 의사 증가
  - 소유자 및 입주자의 요구사항 증가
  - 소유자 사망 또는 요양원 입소에 따른 일시적 빈집의 부족
- 주택 수리비용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마련방안 필요
- 교육이주가정의 지속·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성 대두

## □ 개선방안

- 학부모, 학교, 마을, 지자체 등 **민관 공동대응**을 방침으로 하여 **지역 공동체의 상시 협의기구 운영**
  - 월 1~2회 청성면민협의회 발전분과 회의 진행 중
- 교육이주의 최우선 과제인 주택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모색**
  - 협찬·후원금 모금 및 행정적 지원
-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필요성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
- 장기 방치된 폐가의 매입과 신축을 통한 공급방안 검토
- 읍면별 추진 중인 **지역특화사업비** 활용한 빈집 리모델링 방안 강구
- 빈집 확보와 수선을 통한 교육이주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 타 시군과 같이 **군 자체사업**으로 교육이주주택 확보방안 검토

## 지역소멸 위기! 대안적 지역교육의 해법 토론문

엄희진 /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2015년에 만들어진 행복교육괴산어울림은

2017년 충북에서 처음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작할 때 제대로된 민관학거버넌스를 통해 괴산에서도 희망 가득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괴산군으로부터 전액을 위탁 받아 괴산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받아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괴산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괴산 전 지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대표 활동가들과 청소년분과, 지역아동센터연합, 초중등분과 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각 권역의 활동가들과 힘을 합해 읍면단위의 마을교육협의회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권역대표활동가들과 권역별 마을교사회의를 통해 마을교육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을 잇는 다양한 활동과 마을의 특색을 개발한 마을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계획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산촌지역에서의 마을교육과정, 마을이 살리는 학교, 마을에서 나의 길 찾기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마을주민과 활동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실천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 저희 괴산군은 2019년 청안면 부흥리 백봉초등학교 인근에 지어진 '행복나눔 제비둥지'를 시작으로 11개 읍면지역에 행복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인근 초중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하게 인구수와 학생 수의 증가로만 평가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서로 힘든 기초지자체끼리 인구유치 경쟁에 나설 수만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사는 것만으로 불평등한 여러 구조와 격차에 대하여 순응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유학 등의 방법으로 대도시의 인구와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삶과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또한 학생 수가 없다고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학생이라도 지역이 함께 지켜

내고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100년 뒤에는 인구가 70%가 감소한다는 작년 감사원의 보고에 의하면 229개 지자체중의 96%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인구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규모라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을의 자립능력과 삶에 기반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괴산군은 2023년이면 모든 면단위에 행복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며칠 전 괴산군수는 교육마을 괴산을 위한 교육정책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에 들어온 청년과 이주민들이 괴산의 특색있는 교육과 지역적 특색을 통해 정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 지자체가 더 이상 교육과는 무관하게 행정만을 주도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명	구분	가구 수	비고
행복보금자리주택	감물면	10	2022년 입주  48가구 202명 입주
	장연면	10	
	사리면	8	
	불정면	10	
	청천면 송면리	10	
행복기든보금자리주택	연풍면	10	2023년 입주
	칠성면	10	
	문광면	10	
	소수면	10	
행복나눔 예비동지	청안면 부흥리	14	1차 권역사업/2차 군사업
청안 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단독주택 22평형	11	만19~39세 이하 세대주 →1인 청년
	단독주택 24평형	7	
	쉐어주택	18	
감물 세대공감이음프로젝트	다자녀주택	8	국토교통부주관 '2022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청년주택	4	
꿈자람보금자리	괴산읍	20	도시재생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청천허브센터 주거플랫폼	청천면	20	도시재생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
총 가구 수		190	약 700명(예상) 단위 학교별 평균 약 27명 증가

---

토론 3

## **지역소멸위기! 대안적 지역 교육의 해법 토론**

---

한석주 / 제천 청년마을(주) 대표

## 농산촌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윤희철 / 충북도교육청 행정과 주무관

- 우리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먼저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작은학교 활성화 추진계획은 작은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의 특색화, 학생유입 환경 조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의 육성 및 교육과정 정상화에 있습니다.
- 도내 작은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전체 256개교 중 38.2%를 차지하는 98개교가, 중학교는 128교 중 26.5%인 34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학교수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전체학교	작은학교	전체학교	작은학교	전체학교	작은학교	
초	258	95(36.8%)	259	99(38.2%)	256	98(38.2%)	분교장 제외
중	127	35(27.5%)	128	33(25.7%)	128	34(26.5%)	
합계	385	130(33.7%)	387	132(34.1%)	384	132(34.3%)	

※ 중기학생배치계획상 학령아동 감소로 2028년도에는 60명이하인 초등학교는 262교 중 약 43%인 113교가, 중학교는 130교 중 약 30%인 38교가 될 것으로 예측됨.

※ 별첨: 지역별로 작은학교 현황

- 작은학교의 문제점은 학생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및 교육여건 악화, 또래집단의 부재로 정서발달 및 사회성 교육 악화, **학생유출 가속화로 지역사회 해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유입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내·외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사업과 공동(일방)학구제 운영, 통학여건 개선사업,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사업은**

- 읍·면지역의 6학급 이하 초등학교, 3학급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육, 진로, 독서·인문소양 등의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교육지원청과 본청의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사를 선정하고, 5개년에 걸쳐 5,500만원 ~ 8,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색학교는 사업종료 후 재지정이 가능하며 2022년도에는 30개교에 약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한 통학구역으로 실질적으로 학생 유입이 가능한 작은학교와 큰 학교를 선정하여 작은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2020학년도 35교, 2021학년도 39교, 2022학년도 40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학여건 개선사업은**

- 읍면지역의 학령아동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으로
- 현재 232교에 통학버스 298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 버스지원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학택시 75대와 교통비(41명)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136억 298만원)

그리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 지역별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지원에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주거플랫폼 사업 공모에 괴산군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한 결과,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이 사업은 특히 교육프로그램 연계 시 공모 선정에 가점이 있던 사항으로 교육과의 연계를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생활거점 인프라가 형성되어 작은학교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작은학교를 살리기는 위하여는 교육청과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은 특색학교 지정 및 지정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 학교는 학생들이 찾아가고 싶은 교육과정 운영을,
  - 지자체는 청년세대 및 초·중학교의 자녀들 둔 30~40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주여건 등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촌 특색학교 예산지원 별첨**

-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지원
  -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을 활용한 작은학교 지원
  - 지원대상: 6학급 이하 초·중·고 학교별 1,000만원 지원
  - 사용내용: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학교와 지역간 교육 협력 체계구축 등

**< 사 업 예 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어촌 협력 교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교육, 화상영어</li> <li>- 학교특색프로그램 지원</li> <li>- 진로·문화 교육활동</li> <li>- 창의코딩·드론교육</li> <li>-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li> <li>- 공동교육과정 지원</li> <li>- 소규모학교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학교와 지역간 교육 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교육공동체 운영(한마당 잔치 운영 등)</li> <li>-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 밖 배움터 운영</li> </ul> </li> </ul> |
|---|--|

※ 지역별로 작은학교 현황 별첨

학교수	2020년				2021년						2022년					
	초		중		초		중		작은학교증감		초		중		작은학교증감	
	전체 학교	작은 학교	전체 학교	작은 학교	전체 학교	작은 학교	전체 학교	작은 학교	초	중	전체 학교	작은 학교	전체 학교	작은 학교	초	중
청주	92	12	46	3	94	13	47	3	1	0	94	12	47	4	△1	1
충주	36	15	19	8	36	17	19	6	2	△2	35	16	19	7	△1	1
제천	24	10	13	7	23	9	13	7	△1	0	23	9	13	7	0	0
보은	15	13	5	2	15	13	5	2	0	0	14	12	5	2	△1	0
옥천	12	7	5	3	12	7	5	3	0	0	12	7	5	3	0	0
영동	14	10	7	4	14	10	7	4	0	0	14	10	7	4	0	0
진천	15	4	6	0	15	4	6	0	0	0	15	4	6	0	0	0
괴산증평	18	11	11	5	18	11	11	5	0	0	18	11	11	5	0	0
음성	21	6	10	1	21	7	10	1	1	0	21	10	10	0	3	△1
단양	11	7	5	2	11	8	5	2	1	0	10	7	5	2	△1	0
합계	258	95	127	35	259	99	128	33	4	△2	256	98	128	34	△1	1

※ 농산촌 특색학교 예산지원 별첨

(단위:천원)

세부사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문화예술	20,000	15,000	15,000	15,000	15,000	80,000
학교체육	20,000	15,000	15,000	15,000	15,000	80,000
진로교육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55,000
독서·인문소양교육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55,000
기타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55,000

※ 2022년 농산촌 특색학교 현황(초 25교, 5교)

(단위: 교, 천원)

선정연도	지역	학교명	세부사업	2022. 지원금액	2022. 누적금액
2019	청주	문의초	문화예술	15,000	65,000
2019	충주	수안보초	문화예술	15,000	65,000
2019	음성	쌍봉초	문화예술	15,000	65,000
2019	단양	어상천초	문화예술	15,000	65,000
2019	보은	수한초	학교체육	15,000	65,000
2019	괴산증평	죽리초	학교체육	15,000	65,000
2019	진천	금구초	진로교육	10,000	45,000
2019	괴산증평	청안초	진로교육	10,000	45,000
2019	진천	구정초	독서인문소양교육	10,000	45,000



선정연도	지역	학교명	세부사업	2022. 지원금액	2022. 누적금액
2019	옥천	군서초	기타(창의융합교육)	10,000	45,000
2019(총 11교)	충주	노은중	진로교육	10,000	45,000
2020	괴산증평	보광초	문화예술	15,000	50,000
2020	청주	강내초	학교체육	15,000	50,000
2020	옥천	이원중	진로교육	10,000	35,000
2020	영동	매곡초	독서인문소양교육	10,000	35,000
2020(총 5교)	진천	문백초	기타	10,000	35,000
2021	제천	화당초	문화예술	15,000	35,000
2021	진천	초평초	문화예술	15,000	35,000
2021	충주	가흥초	학교체육	15,000	35,000
2021	청주	갈원초	진로교육	10,000	25,000
2021	음성	오선초	독서인문소양교육	10,000	25,000
2021	보은	관기초	기타(생태교육)	10,000	25,000
2021	옥천	군남초	기타(생태교육)	10,000	25,000
2021(총 8교)	진천	백곡초	기타(창의융합교육)	10,000	25,000
2022	옥천	안내중	문화예술	20,000	20,000
2022	괴산증평	문광초	문화예술	20,000	20,000
2022	충주	대미초	학교체육	20,000	20,000
2022	단양	영춘중	진로교육	15,000	15,000
2022	영동	심천중	기타(다문화교육)	15,000	15,000
2022(총 6교)	보은	종곡초	기타(놀이교육)	15,000	15,000
합계(총 30교)				400,000	1,155,000

※ 공동(일방)학구제 운영교: 40교 운영(초 35교, 중 5교)

(2022. 교육행정요람 기준 / 특수학급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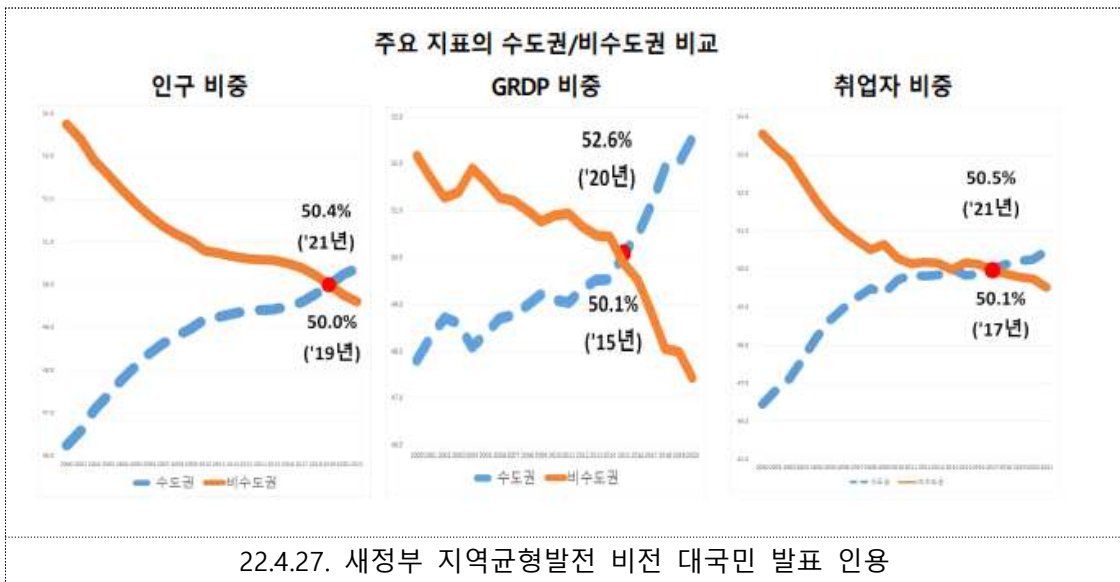
## 공간적 정의 실현과 소규모 학교 정책

노한나 /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 연구사

###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일반론

이 글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교육 분야의 지역 격차에 주목한다.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표현되는 지역 간 격차이고, 또 하나는 충청북도 지역 내 격차이다.

최근 새정부 균형발전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하는 지방균형발전 비전을 지난 4월 27일 발표했다. 잇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을 예고하며 명실상부한 지방 중심의 국정운영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인구와 일자리 등의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된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재난 상황에 가깝다. 지금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박탈감에 시달린다. 일자리 문제로 인한 젊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는 지방 대학의 생존 문제로 연일 언론에 보도된다. 이러한 흐름은 의무 취학과 학구 개념이 강한 초중등교육에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2. 학생 수로 보는 충청북도 지역 내 격차

위 주요 지표만 봐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 표현되는 지역 격차 역시 심각하지만, 충북 지역은 상황이 약간 달라서 지역 내 격차 또한 문제가 있다. 이는 교육 분

야에서는 장기적 추계를 볼 때 전망이 더 어둡다. 최근 인구통계를 보면, 충북 지역의 유초중등 학생수의 60%가 청주에 몰려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진행 양상을 보면 이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정 의제화 되어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어 대책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충북 지역 학생수의 다수가 청주권에 몰려 있는데 이는 아직 도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하다. 학생수는 단순히 교육 의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 의제가 복합적으로 정주 여건과 관계 있기 때문에 청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절대적 학생수 감소는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학교 교육의 질이 우려되면 3,40대 청장년층은 점점 더 이주를 희망하지 않게 된다. 도시의 삶의 질은 농산어촌의 뒷받침이 있기에 유지된다. 농산어촌은 식량을 생산하고 물과 공기의 질을 관리하며, 도시민에게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는 배후지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농산어촌은 도시로 가지 못한 패배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 2류 시민으로 사는 곳이 아니다. 도시민과 똑같이 삶의 질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다원적 기능을 하는 장소다. 이것이 충북의 학생수 문제를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만의 의제로 보면 안 되는 이유다.

행정구역별	2020	2021	2022
충청북도	85,135	84,263	83,827
충주시	10,311	10,020	9,975
제천시	6,228	6,077	5,933
청주시	50,284	50,105	50,087
보은군	1,067	1,053	993
옥천군	2,046	2,003	1,919
영동군	1,623	1,552	1,518
진천군	5,170	5,357	5,470
괴산군	1,007	1,023	992
음성군	4,353	4,156	4,082
단양군	925	875	823
증평군	2,121	2,042	2,035
최근 3년간 충청북도 초등학생 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편집 인용			

### 3. 초중등 분야 학생의 지역 정주 인식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충북 도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지역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충북 도내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청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가장 높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청주 지역에 살고 싶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14.1% 밖에 되지 않는다. 도내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청주 지역의 아이들이 이렇진대, 다른 지역은 더욱 부정적 응답이 높다.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과 음성이 포함된 중부권이라고 특별히 호의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제천, 충주, 단양 등 북부권의 아이들은 8%만이 지역에 남는 삶을 원한다고 답했

다. 북부권 학생들은 열 명 중 단 한 명의 아이도 앞으로 지역에 적극적으로 남을까 말까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더 심해지는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백명중에 네 명 정도만이 지역에 남는 삶을 원하고 있다.

	사례수	우리 지역마을을 떠나 더 살기 좋은 지역마을으로 이주하여 살고 싶다.		우리 지역마을에서 터전을 잡고 계속하여 살고 싶다.		우리 지역마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긴 하지만, 어른이 된 다음 그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싶다.		계	
		명	%	명	%	명	%	명	%
전체	2822	943	33.4	323	11.4	1556	55.1	2822	100.0
지역	북부권	766	47.3	61	8.0	343	44.8	766	100.0
	중부권	694	35.0	68	9.8	383	55.2	694	100.0
	남부권	146	26.0	22	15.1	86	58.9	146	100.0
	청주권	1216	24.7	172	14.1	744	61.2	1216	100.0
소속학교	초등학교	748	18.7	138	18.4	470	62.8	748	100.0
	중학교	1428	32.1	160	11.2	810	56.7	1428	100.0
	고등학교	646	53.4	25	3.9	276	42.7	646	100.0

어른이 되면 지역 마을에서 거주 의사(학생), 2022 충북지역연계 교육과정 모델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인용

충북 도내 학생들의 전체 비율을 봐도 열 명 중 한 명만 적극적으로 지역에 남아서 살길 원하고(11%), 아홉 명의 학생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판단 유보, 또는 떠나고 싶어한다.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 남는 삶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못한 패배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과, 아이들이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지역에 남아서 사는 어른들이 지역을 떠나면 워너이고, 남는 삶은 루저라고 인식하게끔 한 것은 아닐까? 아이들의 이런 인식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의 인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온 것이 아닐까?

#### 4.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 인식 변화 필요

교육의 영역은 빙산과 유사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사회는 교육, 특히 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삶에 안전성과 관성을 제공한다. 한 차시의 가시화된 수업 또는 학생들 하루의 학교 생활은 실제로는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인 비가시적인 사회적 구조 아래에서 실행된다. 아이들은 정해진 수업 시간, 교사, 교과서, 규격화된 필기구를 통해 학교에서 정선된 교과를 학습한다. 이러한 교과의 내용은 지난 세대의 인식을 여전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룰테

면 성별 격차가 여전히 드러나기도 하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 권리 표현이 드물다. 새로운 고정관념 이슈로서 도시 지역에 사는 것이 좀더 성공한 삶이라는 잠재적 인식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나 성별 격차에 상관없이 삶의 질이 보장받아야 하듯이, 공간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어디에 살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간적 정의가 교육의 내용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업시수 증감 20%를 창의적 체험활동과 통합하여 자율탐구과정으로 편성하여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성취기준 개발과 재구조화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주제통합, 학생활동 목록 등이 학교에서 만든 교과목이라는 관점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교육과정 재구성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밝힌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도 동일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2017년부터 시작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좀더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좋은 사례들은 소멸 위기를 맞은 학교들에서 학교와 지역 양쪽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학교 유지를 실행한 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사가 한 차시의 흥미있는 수업을 주민과 협력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지역의 교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한 교사의 동기부여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비교적 학교-지역 연계 수업이 쉽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자원을 학교에게 소개하고, 교사들에게 지역을 흥미롭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하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긍정적 지역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과정 재구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을 통한 제도의 힘이 실리지 않고는 진행되기 어렵다.

## 5. 소규모학교 정책의 선택지와 그 논리-중학교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는 실제 정책적 부분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방향 공동학구제,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두세개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어렵긴 해도 어느 정도 학생수를 유지하는 흐름이 있다. 또한 괴산군의 경우처럼 지자체 또는 지역민이 나서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택 확보 후 교육이주를 활성화한 학교 유지 성공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의 문제는 중학교 이상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충북 도내에 5년 이내에 총 학생수 20명 이하가 되는 중학교가 5개나 되는 시군 지역이 있다고 하자. 재학하는 학생수보다 교직원의 수가 더 많은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많아지면, 방만한 비경제적 운영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정책적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미 다 실행해 본

방안이다. 첫 번째는 기숙형 중학교이다. 두 번째는 초중등통합학교이다. 세 번째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 또는 분교장 격하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행유지이다. 모두 다 실행해 본 방안이지만, 이미 없앨만한 학교를 다 없앤 상황에서 다시 또 학교를 없애는 것은 지역사회의 소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큰 지역민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통폐합 규정 역시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몇 명이든 지나치게 작은 학교를 계속 유지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자성 역시 교육계 안에서 없지 않다. 이런 소규모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지, 교직원을 위해 존재하는지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소규모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양극단에 서는 의견 대립이 늘 존재하는데, 극단적 두 주장 모두 학생을 위해서, 라는 목적을 두고 논쟁한다. 실제 배경으로 짐작되는 경제성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 지역 내에서 주장하는 경우는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최근에는 보기 드물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경제성의 논리로 교사 수와 학교 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논리를 공간적 정의를 근거로 하여 방어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인다. 이유가 무엇이든 학교 해소를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방법적 대응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학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수업의 질 저하와 생활지도의 문제

학교 해소를 말하는 측의 근거는 첫째, 소규모 학교의 수업의 질 저하를 든다. 초등학교까지는 몰라도 특히 중학교 이상의 소규모 학교는 학습의 질이 떨어지니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를 학교를 유지해야 학생을 위한 수업의 질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학교에서 축구 팀 경기는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담 같지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장이다. 축구는 최소한 11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야 한다. 두 팀이 되려면 22명의 학생이 필요하다. 풋살로 규모를 줄여도 한 팀에 5명씩, 10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생활지도의 문제다. 동일한 초중학교를 소수 인원의 아이들이 9년씩 다니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경험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등이 고착되어 교사의 개입으로 관계가 변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겪을 수 있도록 학급 학생 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축구팀보다는 논리가 타당하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소규모 학교가 교육의 질이 더 낮다는 논리적이고 분명한 근거는 없다. 또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통폐합하거나 아이들을 멀리 보내는 기숙형 중학교나 초중통합학교가 되어서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결과 또한 분명하지 않다. 특정하게 결과를 내릴 수 없을 만큼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 ②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의 실험

그러나 많은 현장 교사들이 소규모 학교는 수업이 나태해지고, 이미 고정된 학생들 관계를 교사가 개입하여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많은 연구의 면담에서 고백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착화된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 생활지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몇 주 이상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학생들이 더 많은 또는 완전히 다른, 다수의 동급생과 인간관계를 겪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방학을 이용한 첫째 방학을 이용한 대학생과의 수 주 이상의 장기 멘토링 또는 캠프, 둘째 장기간의 여행이라 이름 붙일 만한 다른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셋째 성인 학습자와의 평생학습 참여 등을 기회 대안으로 생각해 본다. 이 대안은 학교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는 공동 의제로서 대안을 만들어야만 한다.

학교 수업의 질과는 별개로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공간과 사회안 전망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제천의 청년마을, 괴산의 어울림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모델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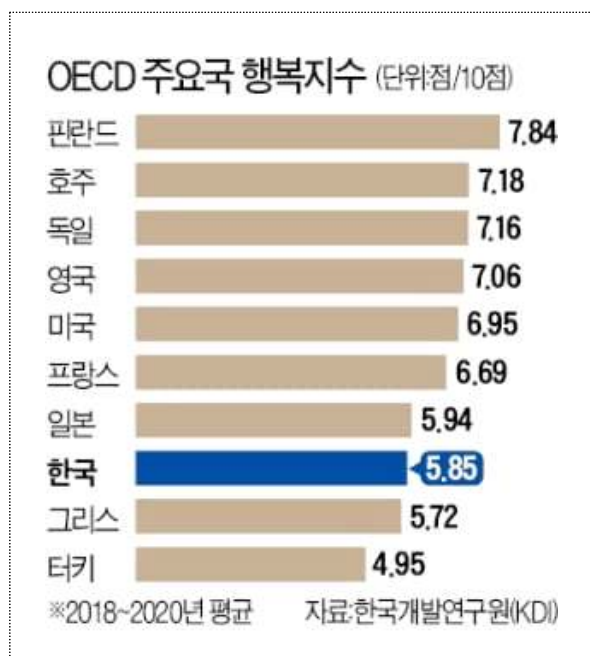
앞서 학생수의 60%가 청주에 거주한다는 통계를 밝혔는데, 교사의 거주지는 이보다 더 불균형할 것으로 짐작된다. 인사상 혁신이 필요하다. 충북의 교사는 모두 청주, 대전, 세종 대도시에서 통근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일반적 인식이고 이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박탈감의 요인이 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부임하는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소규모 학교 근무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소규모 학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른바 승진을 위한 벽지 점수라는 것이 많은 학교 교사들에게 동기가 되기도 한다. 점수를 쌓기 위한 보고서 작성 등에 매달려 실제 수업을 소홀히 하거나 근평을 받으려고 학교 내 상급자에게 연연하는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건강하다면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점수에 관계 없이 선량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문성 있는 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소규모 학교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한국의 교사 집단은 학교 외부와 관계 맺기를 매우 꺼려하는데,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생태친화적인 자연환경과 폭넓은 사회적 관계 자본에 대한 매력들을 교사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신규 교사에게 지역 내 주민등록을 수년간 옮겨 오는 조건으로 관사 등의 편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부 지방직 교사, 지역 장학사 채용, 또는 농산어촌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채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6.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할 일

지금의 기성세대가 그랬듯이, 우리 아이들은 지역을 떠나 살도록 동기가 더욱 강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 기성세대의 인식은 전쟁 이후 경제발전기의 한국이 압축성장을 위해서 선택한 국가전략방안에 기인한다. 수도권에 가서 사는 삶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절대 진리가 아니라, 고도성장기의 국가가 만든 인위적인 비전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체계를 이룩한 북미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수도권 집

중화율이 우리만큼 높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행복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했다.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 OECD 37개국 중 35위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5.72점), 터키(4.95점)뿐이다. 이러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역 의제 중심으로 보는 관점 역시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자라는 곳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이 있다면 행복도 역시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제도적인 분야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의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위계가 맞지 않다. 광역과 기초라는 위계상 어긋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자치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반행정과 통합을 원하거나 반대하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러한 모순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발제자는 현재의 교육자치 일반자치 상황에서 교육민회로 지역 교육의제를 해결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 민회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지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가 확대되었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의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시군이 학교 내 구성원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지역 내에 없어도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 조직에 학교 구성원 중 학교장,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교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조직화되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이 활성화된 지역이 많지 않



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조직적 파악이나 구조적 사업 동력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현장의 학교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유관성을 띠는 교사, 학교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충북은 오래된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자원이 적지 않다. 또한 지역을 지키고 사랑하는 출향민과 선주민들의 관심을 공적인 동력으로 전환하는데에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북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손쉬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식의 낡은 주입식, 자기중심적인 ‘교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북은 유학의 거두 송시열의 탄생지이고 뿌리깊은 유학의 고장으로 지금의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옛 구습 또한 존재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어른들은 충효사상이나 애향심에 대한 집합 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의 공간적 정의를 실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생이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참여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아이들은 참여를 통해서 주인이 된다. 둘째, 지역 내 사적 사회 자원을 맺을 수 있도록 어른들과 신뢰롭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성장기에 농산어촌의 아름다움과 정서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 관료 중심으로 업무 칸막이를 두고 실시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신뢰를 가지고 협력하려고 노력하며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소규모 학교의 교사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의 삶을 여러 방식으로 풍요롭게 해야 한다.

이미 소멸 위기에 있는 충북 도내의 많은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내오고 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위기를 현명하게 타개할 방안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소멸위기! 대안적 지역 교육의 해법

홍성학 / 충북보건과학대 명예교수, 충북참여연대 교육위원

### 1. 구체적인 충북지역 교육 현장의 실태 파악 및 제시가 필요

- 충청북도 전체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감,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감 등 교육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필요
  - 발제문 'I. 지역공동체의 붕괴와 교육 문제'의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과 농촌 학교의 통폐합'에서 1980년대부터 농촌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실태 파악 자료를 제시하였으면 함
  - 예를 들어 충남의 경우, 학생 수는 2017년 기준 24만 4912명에서 2022년 23만 4192명으로 1만 720명(4.57%)이 감소
  - 충남의 경우 학급 수는 2017년 기준 1만 472학급에서 2022년에 1만 1020학급으로 548(4.97%) 증가
  - 충남지역 과밀학급은 724개교 중 156개교(21.54%), 1만 319학급 중 2542학급(24.635)이며 도시지역 중·고등학교에서 과밀학급 비중이 높음
  - 이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도시에는 학교 수와 학급 수가 늘어나고,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작은 학교 통·폐합이 자주 거론되고 있음<sup>4)</sup>
  - 충북에도 충북 지역 실태 파악 자료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제시하였으면 함
  - 특히 '지역소멸 위기! 대안적 지역교육의 해법' 제목의 토론회 취지에는 "최근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충북의 현황은 어떤지를 제시하였으면 함
  - 즉 지역소멸 위기라는 문제의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지역교육을 들어 토론회를 하는 것이므로 지역교육의 문제 현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해결 해법을 찾을 수 있음

### 2.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존재의 필요성 제시와 강조

-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발제문 'IV.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전략' 중 '3. 지역 격차 극

4)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교원 정원 감축은 일차원적인 경제 논리일 뿐!, 충청투데이, 2022. 10. 5.

복을 위한 농촌 교육지원 사업'에서 '작은 학교 육성 정책 추진' 내용을 제시한 점  
바람직 함

- 이러한 내용을 제시할 때 '작은 학교 육성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였으면 함
- 즉, 학교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 교육 인재가 지역의 인재가 되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적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강조하였으면 함<sup>5)</sup>
- 농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관련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면 함
- 작은 학교 존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직원 수급 정책 수립 필요성 강조해야 함 :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수급 정책을 수립하면 농어촌교육 환경은 악화됨<sup>6)</sup>
- 교직원 수급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내용을 바탕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3. 농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해당 내용 소개 필요

- 농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야 함
- 발제문 'IV.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전략' 중 '3. 지역 격차 극복을 위한 농촌 교육지원 사업'의 첫 번째로 소개한 「농어촌교육진흥 조례」의 제정'에서 농어촌 교육진흥을 위한 법률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약칭 : 도서벽지교육법)」과 「농어업인삶의질법」의 내용을 소개한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도서·벽지교육법」과 「농어업인삶의질법」에서 농어촌 교육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현재 법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만을 소개하면서 비판하고 있음
- 따라서 「도서·벽지교육법」과 「농어업인삶의질법」에서 농어촌 교육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현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sup>7)</sup>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 소개 필요

- 2004.1.16.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약칭 : 국가균형발전법)」과 2022.6.10.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 인구감소지역법)」에 대한 내용 소개 및 강조 필요

5)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교원 정원 감축은 일차원적인 경제 논리일 뿐!, 충청투데이, 2022. 10. 5.

6)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교원 정원 감축은 일차원적인 경제 논리일 뿐!, 충청투데이, 2022. 10. 5.

7) 「도서·벽지교육법」과 「농어업인삶의질법」의 농어촌 교육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부록 참고 바람

- 이번 발제문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법」이 소개되지 않았음
- 「국가균형발전법」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sup>8)</sup>
- 특히 이번 토론회가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인구감소지역법」의 관련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야 함<sup>9)</sup>
- 「인구감소지역법」의 관련 조항 내용의 대부분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한 취지, 즉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였으면 함<sup>10)11)</sup>
- 임의 규정 중에서 교육감이 주어로 되어있는 경우,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함

## 5. 충청북도 지자체, 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의 역할 제시

- 지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의회가 추진해야 할 내용과 역할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면 함
  - 「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 강조
  - 필요한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재정 규모 및 확보 등과 관련된 내용 제시
-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의 연대의 필요성과 방법 제시 필요

## 6. 고등교육기관인 지역대학의 발전 방안 논의 포함 필요

- 지역소멸의 교육문제 중 하나로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 논의 필요
  - 이번 토론회는 초·중등교육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역대학의 존재가치와 위기 상황

8) 「국가균형발전법」의 관련 내용은 부록 참고 바람

9) 「인구감소지역법」의 인구감소지역 교육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부록 참고 바람

10)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제9호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

11)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에 대한 문제 의식을 언급하고, 별도 토론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대학은 지역의 경제·산업, 문화,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
- 교육에 있어서 '기승전대학'이란 표현이 있듯이 대학의 역할은 중요한데, 수도권에 서부터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재정지원방식, 입시위주 경쟁 교육 등이 우리나라 대학의 존재가치를 훼손시킴과 아울러 지역대학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초·중등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내몰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법」과 2014.1.28.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대육성법)」에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인구감소지역법」에는 특별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부록

### 1. 「도서·벽지교육법」(1967.1.1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教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농어업인삶의질법」(2004.3.5. 제정)

####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3. 「인구감소지역법」(2022.6.10. 제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5. 「국가균형발전법」(2004.1.16. 제정)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포럼

지역소멸 위기! 대안적 지역교육의 해법

발행일 2022. 10. 11.

발행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모임

연락처 043\_267\_0151 [cbcitizen@hanmail.net](mailto:cbcitizen@hanmail.net)

※ 본 자료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